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특별귀화시 독립유공자 성·본 허용〉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1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의 의견: 법원행정처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4명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법”) 제 96조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 ⑥ (생략) <u><신설></u>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귀화 및 그 성·본에 관한 규정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¹⁾에 따르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²⁾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법」 제5조에 규정한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현행법 제94조³⁾에 따라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
- 1)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성·본을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그 외국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이 성·본을 창설하는 것임(제96조제1항). 한편,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의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음(제96조제2항)⁴⁾.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적취득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의 성과 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임.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실무상 현행법 하에서도 현존하는 성과 본으로 창설허가를 받는 경우도 존재⁵⁾하는 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 후 확인한 제적등본에서 부모·본·호적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례⁶⁾도 있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5) 실무례에서 [...성을 “이(李)”로,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 현존하는 성·본으로 창설 허가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함.

6) 오마이뉴스, “[보도 후] 특별귀화 후 16년 만에 본관 찾은 독립지사 후손”, 2022. 5. 18.

나. 개정안에 관한 검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로 성명(姓名)이 사용되는데, 성(姓)은 개인의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로 성(姓)은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본(本)은 흔히 본관(本貫) 또는 관향(貫鄉)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조(始祖)의 발상지(發祥地)를 의미함.

그런데 흔히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지는 집단들이 서로 동일한 성(姓)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와 달리 동일한 혈통의 연원을 가지고 같은 성(姓)을 사용하지만 이미 분화하여 서로를 별개의 혈연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성(姓)만으로 혈통의 동일성이 곧바로 식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본(本)에 의해 특정된 성을 통해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혈통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성(姓)은 본(本)에 의해 특정된 성을 의미함⁷⁾.

이와 같은 성·본의 의미를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게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간 혈통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예우하는 독립유공자 제도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개정방향이라 할 수 있음.

7) 현재 2003헌가5등, 2005. 12. 22.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성과 본을 창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공자로서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하려는 국적취득자는 “독립유공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므로 개정안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⁸⁾.

둘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문만으로는 그 후손이 외조모 등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법」 제781조⁹⁾에서 자녀는 부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귀화한

8)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법」에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성·본 결정에 있어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를 둘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관계기관의 의견: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가, 국적취득자가 가족관계등록부(제적 포함)상 확인되지 않는 부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면¹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첫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므로 안 제96조 제7항의 ‘독립유공자로서’는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둘째,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① 「민법」 제781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② 직계존속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10) 국적취득자의 부모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제적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귀화자는 부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따른 성·본 창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함.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1호) 제5조(부모의 성과 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귀화자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나 그 부모에게는 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귀화자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성·본을 따름이 원칙인데, 개정안에서는 “직계존속”의 성·본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민법」 제781조와 배치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셋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에 한정하여 종래 존재해 온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96조 제1항의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래 존재해 온 성(姓)·본(本)을 포함하는 문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뿐 아니라 선조의 성(姓)·본(本)을 계승하고자 하는 다른 집단¹¹⁾도 포섭할 수 있으므로 안 제96조 제7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 제96조 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8

11)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를 해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